



OECD의 보건의료 질 제고 방안

김유미 연구원

OECD는 15개국 보건의료의 질 및 사례를 검토하여 제고방안에 관한 정책제언을 발표하였음. 첫째,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일차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에게 종합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케어모델 구축을 제언함. 둘째, 환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보건의료제공자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를 권고함. 셋째, 체계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및 외부 평가 도입을 통해 의료관계자들의 책임감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고함.

- 최근 OECD는 15개국¹⁾을 대상으로 의료전달체계, 환자중심 및 보건인력의 강화, 정보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정책 제언을 발표함.²⁾
-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하며, 환자에게 종합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케어모델 구축을 제언함.
 - 일차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서비스의 질·성과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.
 - 일부 OECD 국가들은 일차의료관리자(PCP: Primary Care Practitioner)의 등록을 의무화³⁾하거나 일차의료관리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⁴⁾함.
 - 영국은 질과 성과모형(QOF: Quality and Outcome Framework)을 통해 일차의료의 성과를 측정·평가하고 의료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.
 - 일차의료상담, 교육프로그램, 스크리닝, 만성질환관리 등 일차의료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일차의

1) 호주, 체코, 덴마크, 영국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일본, 한국, 북아일랜드, 노르웨이, 포르투갈, 스코틀랜드, 스웨덴, 터키, 웨일스.

2) OECD(2017), Caring for quality in health: Lesson learnt from 15 reviews of health care quality .

3) 체코, 덴마크, 이탈리아, 노르웨이, 포르투갈.

4) 호주, 덴마크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노르웨이, 포르투갈.

료와 전문의 간 원활한 환자정보 공유를 위해 통합케어모델을 구축하여 진료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함.

■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다양한 성과지표를 통해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며,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건정보 해석능력 및 보건인력의 역할강화를 권고함.

- 환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제공 과정에 환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보고하는 의료성과지표(PROMs: Patient-Reported Outcome Measures) 및 의료사고지표(PRIMs: Patient-Reported Incident Measures)를 도입하여 의료정책 및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함.
- 환자교육을 통해 보건정보 해석능력(Health Literacy)을 강화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활동을 촉진하고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.
- 지속적인 보건의료 전문가교육 및 개발(CME: Continuous Medical Education 또는 CPD: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)을 통해 의료 전문성을 강화해야함.⁵⁾

■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료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부 평가에 의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의료관계자들의 책임감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고함.

- 일차의료와 사회적 보호(communitary care)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집적을 통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 개개인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다음 진료에 연계될 수 있도록 권고함.
 - 영국, 스웨덴, 포르투갈, 덴마크는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함.⁶⁾
- 외부 평가에 의한 모니터링, 피드백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권고함.
-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의 의료안전성을 제고하고 의료관계자들의 책임감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고함.⁷⁾ [kiri](#)

5) 호주와 영국은 보건의료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을 의무화함.

6) 호주, 체코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일본, 한국, 노르웨이는 사생활보호 법률로 인해 데이터 연계가 어려운 상황임.

7) OECD 국가의 3분의 1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및 임상의 안전성,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비용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.